발행일 2016년 8월 4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keri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wonjea.huh@keri.org)

지식재산 시장이 나날이 팽창하고 있다. 1990년 2백억 달러 수준이던 특허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세계 거래시장 규모는 현재 3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경 없는 치열한 혁신 경쟁이 더욱 세차지고 있다. 가열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기 위해,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기반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여러 제도적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실질적인 향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출원 건수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를 달성했지만 핵심·원천특허 부족 등 질적 가치의 미흡과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분쟁의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우 큰 규모의 적자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WEF나 IMD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관련 여건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들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경쟁력을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기대치 않은 양상을 초래하게 된 우리나라 현 지식재산권 제도의 문제점으로 편중된 중소기업 우선지원 제도, 지식재산권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지식재산 관련 사법제도의 비효율적 체계, 미흡한 특허심사 품질강화 제도 등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향후 기업들의 고른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기준한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의 차별·편중화 수준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고도화된 기술에 관해 전문성과 특화된 법리 이해력 및 적용력이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숙련된 퇴직 심사관 활용 등 보다 실질적인 특허심사 품질강화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식개선과 인프라 접근성 강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특허 생산성 제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등도 추진해야 할 중요한 개선 과제이다.

1. 검토 배경

▫ **최근 인공지능,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등의 가치가 세계 이목의 집중을 받으며 지식재산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창출된 지적 창작물로서, 이 같은 지식재산의 형성과 평가·거래·관리·정보제공·보호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산업을 지식재산산업으로 통칭[1)]

  ○ 지식재산의 구체적인 예: 특허기술, 반도체집적회로(IC) 배치설계, 생명공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디자인, 문화·예술 창작물 등

▫ **지식재산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현재 3,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빠른 성장세 속에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됨.**

- 1990년 200억 달러 규모였던 국가 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2011년 약 2,500억 달러에 이르기 시작해 현재는 그 규모가 3,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의 천문학적 비용의 특허소송에서 드러나듯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 따른 지식재산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 **국내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재산권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 기준 11.5조 원대를 넘어선 상황**

- 국내 지식재산권 시장 규모(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09년] 8조 1,507억 원 ➔ [2010년] 8조 9,347억 원 ➔ [2011년] 10조 8,153억 원 ➔ [2012년] 11조 4,963억 원

1) 지식재산기본법(2011년 5월 제정) 참조

〈그림 1〉 국가 간 지식재산 거래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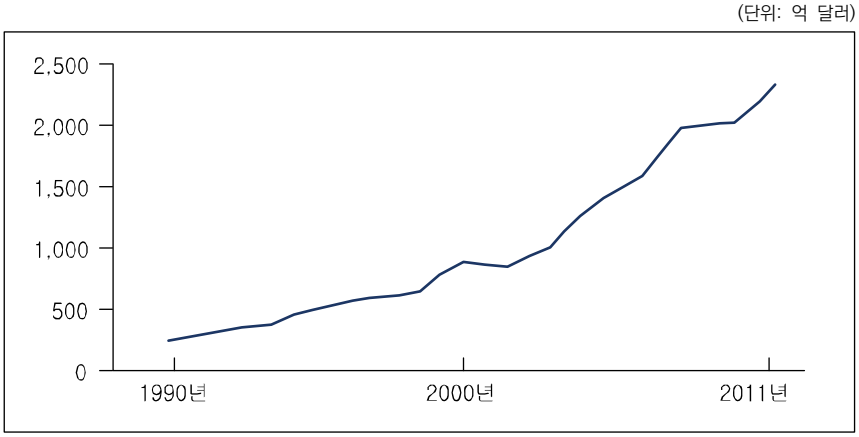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매일경제

▫ **이처럼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시장이 팽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등 지식재산산업의 발전의 근간에서부터 뒤쳐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중·하위권 속하는 것으로 평가됨.

  ○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 결과(2014): 우리나라는 60개국 중 41위로 하위권을 기록

  ○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결과(2016):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52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포진

▫ **지식재산산업의 발전을 꾀하려면 지식재산의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비용과 노력 끝에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에도 적시 대응 및 방비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내실화가 시급**

- 국제무역에서 기술표준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나날이 중요해지며 국제분쟁이 거세어지는 추세인 만큼,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 특허관리전문회사(NPEs)[2]로부터의 국내 기업 피소송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 49.2% (2010~2014년)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과제를 모색하여 지식재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 시사에 초점

-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근 주요국들의 전략적 정책 동향을 탐색 및 제시

2. 지식재산권의 개요

(1)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과학적·문화적 창조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정신적·무형적 창작물을 소유 및 보호하는 권리**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위시하여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이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임.

▫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됨.**

- 산업재산권의 특징: 현재 기술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으로서, 특허청의 심사 및 등록과정 완료를 통해 재산권 보호가 이뤄짐.

  ○ 세부 종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2) 특허관리전문회사(Non Practicing Entities)는 특허에 관한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경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특허를 확보만 하면서 기업을 상대로 라이선싱과 그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로열티, 배상금, 합의금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지칭함. 현재 세계 최대 특허전문회사는 인터렉츄얼 벤처사(Intellectual Ventures)로서, 2008년에만 한국에서 무려 200여 건의 특허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1〉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의 세부 종류별 설명과 예시

구분	내용	예시
특허권	제조 방법, 화학물질의 조성, 비즈니스모델 등의 원천·핵심기술 (존속기간 20년)	핸드폰 액정화면 터치기술 등
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한정된 주변·개량기술 (존속기간 10년)	차량에 탈부착 가능한 핸드폰 거치대 등
디자인권(의장권)	물품의 외관	핸드폰의 둥근 모서리 등
상표권	상품 또는 제작사의 명칭	갤럭시S, 삼성전자 등

자료: 특허청

- 저작권의 특징: 출판 즉시 보호되기 시작해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 해당 재산권이 유지됨.

  ○ 세부 종류: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연기·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미디어 자료 복제 및 배포 권리)

- 신지식재산권의 특징: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에 보호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인공지능, 컴퓨터프로그램,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

  ○ 세부 종류: IC 배치설계, 생명공학 분야, S/W, 영업비밀 등

(2)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국내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

- 지식재산산업의 경제 기여도에 대한 정부 추정치(2010년 기준)[3]: 259만 명(우리나라 경제 전체 총 고용의 14.7%) 고용 창출, 부가가치 354.1조 원(GDP의 33.8%) 창출

▫ 글로벌 경제에서도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한 지식재산

- 경제 패러다임이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자본에서 기술·지식으로 기업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 이동

- 지식기반 경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지식재산)가 시장 창출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각광받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4]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

- 기술력·브랜드·디자인 등의 무형자산이 수익극대화의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무형자산들을 권리화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간·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지 못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과의 혁신 경쟁에서 밀릴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협적인 샌드위치 상황은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만연화될 가능성 고조

3)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

4)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의 저술서 '*The Creative Economy*' (2001) 참조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전략은 기존 사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기업들이 시장 선점과 수익 창출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될 것임.

3.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현 주소와 문제점

□ 그 간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기반 조성을 추진해 왔음.

-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 R&D부터 심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의 품질강화를 위한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지식재산권의 심사 처리기간[5] 단축

  ○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예: 지식재산 분쟁대응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연구개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지식재산 활용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책 마련과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스템 제공*

  * 산업은행과의 협력 모델을 통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특허기술 가치평가, 민간은행 대출을 연계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법령 정비

  ○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히 지식재산의 조기 권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출원 형식요건 완화 등을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

  ○ 영세상인의 선(先) 사용 상표 보호 등을 위한 상표법 개정

  ○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 위조상품 신고포상제도,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타부처와 지식재산권 관련한 정책협력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및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청 산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신설

  ○ 예컨대 현재 발명,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컴퓨터프로그램과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반도체칩 등 산업 전반에 관한 진흥정책은 산업자원부, 식물품종은 농림축산식품부, 생명공학 분야는 보건복지부, 모조품 수출입 분야는 관세청 등이 관장하면서 당해 기관의 이해 판단에 따른 대응하고 있어 중복투자, 중복연구 등으로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큼.

  ○ 이에 산업부-중기청-특허청, 미래부-특허청, 육·해·공군-특허청-변리사회 등과 정책협력 제고 추진

- 주요국과의 글로벌 지식재산협력 확대 정책 추진

- 대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관계기관과 시장에 제공

  ○ IP 이슈&포커스, National IP Policy, IP Insight, 기초연구(법제분야 8개, 경제·정책분야 4개) 등

5) 출원인이 심사 청구한 시점부터 심사관이 최초 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한 시점까지 걸린 기간

▫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이 같은 제도적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지식재산 경쟁력의 실질적인 향상(질적 향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 세계 탑(top) 수준의 특허출원 건수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 달성

  ○ R&D 100만 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4.1건, GDP 10억 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105.8건으로 우리나라가 1위(2012년 기준)[6)]

- 그러나 핵심·원천특허 부족 등 질적 가치의 미흡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우 큰 규모의 적자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기준 61억 7천만 달러 적자로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며 미국의 2010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또한 제도적 노력 속에도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추세**

- 확연한 증가세에 놓여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로부터의 국내 기업 피소송 건수

6) 특허청(2014)

〈표 2〉 국가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비교

(단위: 억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03.4	-63.4	-80.5	-81.6	-61.7
미국	-68.0	-46.2	-69.8	-72.8	-59.5
중국	10.2	14.1	16.3	19.3	22.3
일본	-8.2	-7.2	-3.4	-2.1	-2.8
영국	-5.8	-4.0	-5.6	-6.8	-7.2
독일	-4.4	-4.9	-3.2	-4.1	-5.4
프랑스	-2.4	-1.6	-1.9	-3.0	-3.9
스웨덴	-0.9	-0.4	-0.4	-0.4	-9.7
덴마크	-2.3	-2.7	-2.1	-1.6	-1.3
스위스	-1.6	-1.5	-2.0	-1.3	-2.1
네덜란드	-1.4	-0.6	-0.8	-1.7	-2.0

주: 1) 비영리법인분만 아니라 외투대기업 및 외투중소·중견기업들을 모두 포함
2) 미국의 경우 구글(Google),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페이스북(Facebook), 스타벅스(Starbucks) 등 많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거물급 기업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BEPS)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사료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6.5.9일자 기준)

〈표 3〉 NPEs로부터의 국내 기업의 피소송 건수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Q	연평균 증가율 (2010~2014)
피소송 건수	58	96	159	288	244	45	49.2%

주: 2015년 1분기 동안의 피소송 건수 45건은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임.
자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표 4〉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국제평가 결과와 주요국 비교

	IMD	WEF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1]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3]
한국	5.16 (41위/60개국)	3.7 (68위/143개국)	4.2 (52위/140개국)
미국	8.75 (3위/60개국)	5.4 (20위/143개국)	5.8 (15위/140개국)
중국	4.35 (52위/60개국)	4.0 (53위/143개국)	4.0 (63위/140개국)
일본	7.87 (14위/60개국)	6.0 (7위/143개국)	6.1 (6위/140개국)
영국	8.21 (7위/60개국)	5.9 (8위/143개국)	6.0 (7위/140개국)
독일	8.55 (4위/60개국)	5.4 (21위/143개국)	5.7 (20위/140개국)
프랑스	8.23 (6위/60개국)	5.6 (13위/143개국)	5.8 (14위/140개국)
스웨덴	8.17 (9위/60개국)	5.5 (19위/143개국)	5.8 (16위/140개국)
덴마크	8.43 (5위/60개국)	5.3 (24위/143개국)	5.6 (21위/140개국)
스위스	9.12 (1위/60개국)	6.0 (4위/143개국)	6.2 (3위/140개국)
네덜란드	8.20 (8위/60개국)	5.7 (11위/143개국)	6.0 (8위/140개국)

주: 1) 국가별로 지식재산권이 보호된 정도를 계측한 수치값(1~10점)과 그에 따른 순위임. 조사기간(2012~2013년) 중 최고 평점 국가는 스위스(9.12점)이며, 최저 평점 국가는 베네수엘라(1.40점)로 분석되었음. 전체 60개 조사 대상국의 평균은 6.15점으로 나타남.
2) 국가별 지식재산의 보호 정도를 계측한 수치값(1~7점)과 그에 따른 순위임. 조사기간(2013~2014년) 중 최고 평점 국가는 핀란드(6.2점)이며, 최저 평점 국가는 베네수엘라(1.6점)로 분석되었음. 전체 143개 조사 대상국의 평균은 3.8점으로 나타남.
3) 국가별 지식재산의 보호 정도를 계측한 수치값(1~7점)과 그에 따른 순위임. 조사기간(2014~2015년) 중 최고 평점 국가는 핀란드(6.3점)이며, 최저 평점 국가는 베네수엘라(1.7점)로 분석되었음.

▫ 글로벌 시장의 시각에서 지식재산권 제도 및 관련된 여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경쟁력은 취약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진단

- 현재 국제적 잣대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관련된 여건 수준은 중·하위권 수준에 포진하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양상과 모습들은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① 지식재산 활용 역량 및 기반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식재산 강화 전략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립되는 반면, 대기업向 전략은 부족

〈표 5〉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단위: 억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Q	2Q	3Q
수지	-79.4	-40.1	-54.3	-54.2	-32.7	-22.9	-5.6	-4.1
대기업	-80.3	-45.1	-61.8	-63.3	-42.6	-17.5	-2.1	-3.9
중소·중견기업	0.9	5.0	7.5	9.1	9.9	1.7	2.6	3.4
수출	36.9	53.0	51.3	57.1	69.1	26.4	21.7	28.0
대기업	26.5	37.5	33.0	37.1	47.0	15.1	11.6	15.7
중소·중견기업	10.4	15.5	18.3	19.9	22.1	5.2	5.7	6.6
수입	116.3	93.1	105.6	111.3	101.8	49.2	27.3	32.1
대기업	106.9	82.6	94.8	100.5	89.6	32.6	13.7	19.5
중소·중견기업	9.5	10.5	10.8	10.8	12.2	3.5	3.1	3.2

주: 외투대기업, 외투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6.5.9일자 기준)

- 국내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 적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현

  ○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가 공식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꾸준히 흑자세를 구현 중

  ○ 그에 반해 국내 대기업은 가장 최근 자료집계 시점인 2015년 3분기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여전히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이 같이 국내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는 것은 국내 대기업이 외국기업들과의 특허분쟁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면서 지식재산권 수출·수입에 상당한 파장이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국내 대기업의 외국기업들과의 국제특허소송 건수는 중소기업들에 비해 최대 4.8배(2013년 기준) 많은 상황 ➔ 시장진출·선점에 빈번한 장애 발생(라이선싱아웃 계약 취소·보류로 인한 수출 중단 및 소송비용 증가 등)

-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하여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모든 측면에서 지원 정책을 수행 중임.

  ○ 예를 들어, ▲심판·소송 비용지원 확대(금융위와의 협력을 통한 On-Lending 대출 지원,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소송비용에 대한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 제공 등), ▲소송보험 지원 확대, ▲해외출원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비영어권국가 진출기업에 대한 기초조사·브랜드개발·해외마케팅 전과정 종합 지원 수행, ▲중소기업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연차 등록료 감면(4~6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지원(국제표준·표준특허 창출 공동지원체계 마련, 국제분쟁 시 해당 표준특허의 표준문서 정합성 분석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 분쟁대응 컨설팅(산업별·기술별 수요자 맞춤형 분쟁정보 제공,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 ▲기술 유출에 대응한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책정되어 있음(특허청, 2014).

  ○ 이러한 가운데,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5)은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 시 '비용적 부담'과 '정보 부족'이 대기업에게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②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사법제도는 다소 비효율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지식재산권 분쟁의 장기화 초래

-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크게 2가지로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과 침해소송(민사소송)으로 이원화

  ○ 심결취소소송: 등록된 특허권의 유·무효 여부 결정, 특허권리 범위의 결정에 대한 불복 사항을 다루는 행정소송

  ○ 침해소송: 특허권의 침해 여부,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청구 등과 관련된 민사소송

- 그 가운데, 법원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특허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불인정하고 있음.

  ○ 현재 변리사와 변호사가 민사소송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막혀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민사소송 당사자는 변리사를 통해 소송 준비를 다 해 놓고도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없어 변호사를 재선임해야만 하며, 때때로 변리사가 재판장 방청석에 자리해 돌발 상황 발생 시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고도화된 기술에 관해 전문성과 특화된 이해가 필요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 배제 문제는 소송을 장기화 하고 소송비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 초래요인으로 작용하곤 함.

③ 기업 수요에 맞는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전문성' 육성 미흡

-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분쟁대응력이 전문성과 체계성에서 취약점을 노출

  ○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당시 관련 업무 인력을 확대 배치하지만 그 때뿐으로, 전담조직의 상시 인력이 소수로 구성되어 있어 항시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선제 대응하는 데 준비가 부족한 상태

  ○ 지식재산 전담 조직과 인력 없이 법무팀에서 관할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성에서도 뒤쳐진 기업들이 많음.

④ 지식재산권 인식 교육 및 분쟁대응 지원 인프라의 접근성 부족

- 수출대상 국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조사, 현지 제도 이해 등 분쟁 예방활동 부족

  ○ 예컨대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 중 지식재산권 보호 사전 예방활동 미실시 비율이 7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특허청, 2012).

- 피침해 분쟁 시 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공공기관에 도움을 의뢰하기보다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법무·특허법인에 경고장, 분쟁발생시 소송제도, 법령, 판례 등 분쟁대응에 필요한 정보와 처리절차를 주로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도움 요청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조사됨.[7)]

⑤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단축됐으나 심사품질 수준을 제고하는 여건 강화엔 효과가 부족한 정책 추진

- 심사 처리기간 단축은 자칫 특허심사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외 권리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취약한 권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7)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5)

○ 동일 연도에 측정돼 특허심사 처리기간과 심사품질 수준의 상호 비교가 가능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세계 최상위이나, 심사품질은 지식재산권 선진국에 비해 저조

○ 주요 경쟁국들이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추월당하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간 단축 추진 과정에서 특허심사 처리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

○ 우리나라는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매우 짧지만(2013년 기준 평균 13.2개월),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250건에 달할 정도로 과다함.

○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허심사 처리기간과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갖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일본은 선행기술조사 용역 의뢰(韓·日만 용역 수행) 후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를 우리나라(10% ↓)에 비해 3배 이상 감소(33.3% ↓)시켰으며, 출원 1건당 심사투입시간도 우리나라보다 3.9시간 많고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분류도 45개나 적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심사의 질적 향상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인력부족에 따른 등록된 특허권의 높은 무효판정 가능성과 함께 질적인 문제 야기 우려

〈표 6〉 주요 지식재산 선도국의 특허심사 처리기간 및 심사품질 수준 비교(2012년 기준)

특허심사 처리기간(평균, 개월)				특허심사품질 수준('우수' 응답 비율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미국	일본	유럽
14.8	21.9	20.1	24.7	61	78	81	92

자료: 특허청(2014)

〈표 7〉 주요국의 심사 처리기간 현황 비교(2013년 기준)

	연간 평균 심사 처리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건)	250	77	234	49	59
	심사 처리기간(개월)	13.2	18.2	14.1	26.4	10.9

주: 본 〈표 7〉에서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2013년 기준 자료임. 한편, 앞서 기술된 〈표 6〉에서는 2012년 기준 자료를 활용했던 바가 있음. 〈표 6〉은 특허심사품질 수준과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상호 연관 지어 분석해야 하는 목적을 띠고 있으므로,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특허심사품질 수준과 특허심사 처리기간 데이터가 같은 해 모두 존재하는 2012년을 자료의 기준연도로 삼았었음을 밝힘.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5)

〈표 8〉 주요국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2014)	(2012.9~2015.1)	(2013)	(2011)
53%	41%	20%	47%

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처리 건 중 무효로 심결한 건의 비율을 말함.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5)

⑥ 지식재산 창출력 제고를 위한 저변확대 미흡

- 지식재산 인력 수요에 대비해 인력 공급을 위한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교육 내실화 및 지식재산 활용 역량 강화 기반 부족

○ 특허청은 2013~2017년 사이 지식재산 창출·관리·서비스 신규인력 수요를 22만 1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학 및 공공연의 교육 여건이 여전히 충분치 못한 실정

○ R&D 투자는 기업에서 많이 하지만 이를 수행할 박사급 인력은 주로 학교나 출연연에 편중(대학·공공연은 박사급 연구인력 기준으로 국가 전체의 약 80%가량을 차지하나 연구개발비 기준으로는 불과 20%대를 차지)

○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등 외국기업들로부터의 특허소송 공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변확대가 필수

4.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방안

(1) 기업규모에 기준한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의 차별화 수준 완화

▫ 기업규모에 따른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의 차별·편중화 수준을 완급 조절하여 향후 기업들이 고르게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데 뒷받침할 필요

- 대기업들의 경우 전체 특허소송 건수 중 피소송 건수의 비율이 평균 85.7%(2008~2013년)에 육박할 정도로 중소기업보다 5.5%p 크고 사업추진 규모의 특성상 소송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기도 해 중소기업들에 비해 여러 모로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할 필요

○ 국제특허소송에서의 기업유형별 피소송 비율(피소송 건수/총 소송 건수, 2008~2013년 평균 기준): 국내 대기업(85.7%) vs. 국내 중소기업(80.2%)

〈표 9〉 기업유형별 국제특허소송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간 평균
국내 대기업	총 소송 건수	104	84	105	215	178	281	161.2
	피소송 건수	70	63	96	150	173	277	138.2
	피소송 비율	67.3%	75.0%	91.4%	69.8%	97.2%	98.6%	85.7%
국내 중소기업	총 소송 건수	64	67	75	63	46	59	62.3
	피소송 건수	46	47	65	45	41	56	50.0
	피소송 비율	71.9%	70.1%	86.7%	71.4%	89.1%	94.9%	80.2%

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제도 개선: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허용

▫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인정 필요

- 변호사 단독대리 시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핵심 사안인 첨단기술의 실체 파악 등 기술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실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신속·정확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가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특허판결의 전문성, 즉 특허기술에 대한 정확한 특성 이해와 이에 기반한 법리 적용은 물론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통일된 법 해석을 위해서 동일한 소송대리권자가 소송을 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소송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

  ○ 실제,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이 많은 경우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 이 같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허용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다소나마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비 부담을 줄여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2015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 시 비용적 부담이 기업들, 특히 중견·대기업들에게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특허 분야에서 앞선 주요국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

  ○ 한편 소송대리권의 독점 문제는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제기됨.

〈표 10〉 주요국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방법 비교

	변리사 소송대리권	추가 참고/설명 사항
미국	불인정	• 법원에서 전문가로서 법정 진술 가능
일본	조건부 인정	• 일본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침해소송에 관한 연수를 수료하고 특허청 주최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권 인정
독일	조건부 인정	• 소송당사자의 신청 시 변리사의 소송 참여 및 법정 진술 가능(판결문에 변리사의 이름 표기 가능)
영국	조건부 인정	• 특허변리사협회에서 송무인가증을 받은 변리사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 가능 • 특허지방법원은 변리사의 단독소송대리권 수행 가능
한국	불인정	• 법원에서 전문가로서 법정 진술 가능

자료: 대한변리사회, 머니투데이「the L」

(3)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분쟁대응 전문성 육성

▫ 외국기업과 벌이는 특허분쟁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관련업무 인력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 전문인력 채용과 더불어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 전문인력 육성 노력을 경주할 필요

  ○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특허청, 무역위원회) 결과: 지식재산 담당인력을 보유한 기업 중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4.5%에 불과

(4)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의지 제고: 인식개선과 인프라 접근성 강화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개선 시급

- 현지 법률 해석상의 오해, 기업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정 등을 고려치 않고 무관용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수출대상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소송 가능성 및 법적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여 국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심각성 인식에 박차를 가할 필요

  ○ 분쟁발생사례, 소송제도, 법령, 판례, 소송소요시간 및 비용 등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 국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인식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불법복제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의지 인식을 제고해 가야 할 것임.

  ○ 2015년 기준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경험 인구는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의 38.4%인 약 1,481만 명으로 여전히 상당한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음(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6).

  ○ 영화·게임·출판·음악·방송 콘텐츠의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적인 시장 침해 규모는 2015년 2조 3,174억 원으로 2014년 2조 2,978억 원에 비해 약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6).[8)]

  ○ 불법복제물로 인한 2015년 기준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아래와 같이 추정되고 있음.

8) 침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콘텐츠 시장의 발전으로 저작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콘텐츠별 이용 금액 역시 높아진 탓으로 분석

〈표 11〉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직·간접 생산 감소	고용 손실	부가가치 감소	세수 손실
콘텐츠 산업	2조 4,152억 원	2만 3,595명	1조 581억 원	692억 원
전 산업	3조 8,141억 원	3만 3,318명	1조 6,621억 원	1,383억 원

자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6)

▫ **지식재산권 지원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필요**

- 피침해 분쟁을 겪은 기업 중 대다수의 기업이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② 도움 요청 절차의 복잡함, ③ 필요 서비스의 미제공, ④ 공공기관의 지원이 비전문적이라고 간주

-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지원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이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됨.

  ○ 피침해 소송·분쟁 대응 시 매우 큰 '시간적 부담'이 상당한 애로사항인 만큼,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지원기관의 제공 서비스에서 이 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실효성을 한층 높여 나갈 필요

(5) 특허심사 품질의 개선 여건 강화

▫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신속한 권리 확보에 분명한 이점을 제공**

- 국가 간 특허 권리화 기간의 차이는 지식재산 역량의 차이로 직결

▫ **이에 따라 단축된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 특허심사의 질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숙련된 퇴직 심사관 활용을 포함한 특허심사관 인력의 증원 등 특허심사 여건을 강화할 필요**

-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않은 짧은 심사 처리기간은 기존 특허기술에 대한 부실한 분석으로 분쟁을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충분한 심사 처리기간을 갖거나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나 적은 경쟁국들에 뒤처지게 할 것임.

(6) 지식재산 창출력 제고를 위한 저변확대 강화

▫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특허생산성 제고**

- 대학·공공연의 낮은 특허생산성은 대학의 특허교육 및 연구원들의 특허관리 역량 부족에 기인

- 따라서 대학의 특허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과목 개설 확대 등의 정책 수립·추진 필요

- 또한 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 중시와 더불어 사업화를 위한 특허개발 중시 필요

  ○ 특허의 사업화 출발점이 되는 특허출원 비중은 대학 3.4%, 공공연 4.2%로 저조[9)]

▫ **원천기술 개발과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급**

-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일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관 R&D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다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특허를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기업·연구소 연구원의 특허 재교육 및 기업의 특허전담인력 수급을 위해 특허전문대학원과 같은 전담교육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할 필요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 기업과 연구현장 간에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연의 협력 내실화가 필요함.

  ○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시, 대학시설 사용 및 투자범위 규정 등을 포함한 법제기반 마련이 중요

9) 특허청

[부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요국의 특징적 정책 동향[10)]

(1) 미국의 『2014~2018 전략계획(Strategic Plan)』

▫ 미국은 『2014~2018 전략계획』(2014.3월)을 통해 품질 위주의 특허정책을 추진하여 모방하기 어려운 강한 특허를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

-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정책

  ○ 2012년 심사관 1,146명을 성공적으로 증원했던 美 특허상표청(USPTO)은 계속적인 특허심사역량 증대와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에 대한 기술 및 법제 교육 강화, 특허품질 측정법 개발, 지역사무소 운영시간 확대 등을 추진

  ○ 특허품질에 대하여 이용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지식재산 세미나 진행

  ○ 특허심사 단계별로 진행 건수·적체 건수, 심사관 수 등에 대한 측정치를 공개해 특허심사에 따른 소요기간을 예상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술발전 적응력이 높은 인력 채용 및 기존 심사관의 퇴직률 감소 추진 등 심사기간 단축 정책 지속 시행

  ○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원에 대한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결정의 적시성 및 품질 유지를 위해 고숙련 인재 고용 및 효율적인 데이터 검색·수집·공유 전략 수립

-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강화

  ○ 美 정부기관 및 의회와의 협력 제고를 통한 저작권 보호정책 개발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추진

  ○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 정책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제공

  ○ 지식재산권 집행 및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들에 대하여 전문성 증진을 도모하는 교육 기회 마련

▫ 또한 美 정부는 USPTO를 통해 개인발명가 및 소기업의 특허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

- 개인발명가 및 소기업 대상 주요 특허창출 지원 정책

  ○ 특허 프로보노: USPTO와 협력을 맺은 각 주(州)의 로스쿨, 비영리기관 등과 함께 특허와 관련한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출원, 소송대리 등)를 제공

  ○ 직접출원 지원: 변리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발명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USPTO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출원인에게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

  ○ 로스쿨 학생 활용: 45개 로스쿨의 1,850명의 학생들이 교수 지도하에 개인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의 특허 및 상표 출원 절차를 직접 수행

  ○ 출원 수수료 감면: 초소형단체 또는 소규모단체 출원인에게 각각 75%, 50%의 수수료를 감면

- 한편, 이용자의 USPTO 서비스와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 위성사무소의 추가 개설과 지역적 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음.

▫ 그 밖에도 무분별한 특허침해 소송을 억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 상·하원 의회에 상정 처리 중

- 'Innovation Act 2015'의 주요 내용: 특허권자는 권한 침해에 대한 경고장에 특허권 침해 주장에 근거가 되는 특허권의 세부사항과 침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

- 'STRONG Patents Act'의 주요 내용: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을 남용하는 기업에 대해 엄중한 대처를 하도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

10) 본 부록에서의 국가정책들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5), 최서희(2015), 이명희(2016)를 일부 인용·발췌한 것에 기반함.

(2) 일본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 총리 직속의 日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시스템 활성화, 수출맞춤형 지식재산 콘텐츠 제작 등을 골자로 하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2015.6월)를 책정

- 세계 최첨단 지적재산입국 실현을 위해 일본은 아래와 같이 3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

  ○ 지식재산 활용 추진: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강화와 지역중소기업에 의한 사업화를 목표로 대기업 또는 대학과의 지식재산 연대 촉진 수행

  ○ 지식재산 분쟁 처리시스템의 활성화: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낮은 승소율과 불충분한 손해배상액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금지청구권 검토,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의 기능 강화 추진

  ○ 콘텐츠의 해외 전개 및 주변 산업과의 연대 추진: 수출 대상국 현지 수요에 맞춘 콘텐츠 제작, 다양한 주변 산업과의 연대 촉진 등 방침 수립

- 3대 중점 추진전략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자 日 정부가 마련한 8대 중요 시책은 다음과 같음.

  ○ 세계 최고속 · 최고품질의 심사체계 실현: 2023년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평균 14개월 이내(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3년 일본 정부는 임기제 심사관 100명을 재채용하며 심사관을 증원한 바 있음.

  ○ 새로운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직무발명 권리귀속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합의 시엔 권리가 발생된 시점부터 특허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형 인상 및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 등을 추진

  ○ 국제표준화·인증에 대한 대처: 일본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민 연대의 전략적 표준화를 한층 더 가속화 하겠다는 전략 추진

  ○ 산·학·관 연대기능 강화: 탐색과 기초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학 기술을 최대한 사업화에 연계시키기 위하여, 대학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정부에 이전하지 않고 상업화 하는 것을 허용하는 美 바이 · 돌(Bayh-Dole) 제도의 일본판 운영을 검토

  ○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 정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이용서비스 등과 같은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집중관리 창구 개설, 콘텐츠 DB구축 등 추진

  ○ 아카이브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비 가속화: 국립국회도서관 검색, 문화유산 온라인 아카이브, 방송프로그램 센터 등의 연대를 통해 공적기관 중심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달성 추진

  ○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협력 추진: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연대협정(EPA)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신흥국에 일본의 지식재산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일본의 심사관·지식재산인재 파견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의 협력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

  ○ 지식재산 인재의 전략적 육성·활용: 비즈니스모델 검토 단계부터 소송대응까지를 조망하여 종합적인 지식재산매니지먼트를 지원할 수 있는 인재육성 정책(지식재산의 권리화·표준화·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략에 관한 연수 및 설명회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

(3) 유럽의 통합적 지식재산권 정책

▫ 유럽은 EU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제도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An Industrial Property Rights Strategy for Europe)」을 수행

○ 유럽이 글로벌 지식기반경제의 도전에 대응하고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식재산권 관련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

○ EC는 산업재산권 전략으로 고품질, 적정성, 일관성, 균형 등 4대 영역으로 제도적 방향을 정립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추진 등 제도적 강화 노력을 지속

○ 개도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침해 방지를 추진

- 통합특허법원 설립 추진

○ EU회원국 중 23개국이 참여하는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을 통해 EU 국가 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와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접근성 증대 및 조속한 분쟁해결을 유도

- 지식재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EU 단일특허의 과다한 갱신료 절감 추진

○ EU 단일특허는 유럽특허청(EPO)의 심사 후 EU 회원국 전체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종 등록이 이뤄진 특허

○ 유럽집행위원회 및 Philips社를 비롯한 유럽의 대기업들은 EU 단일특허의 갱신료가 과다하여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표명

-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인 'Global Dossier'의 확장 추진

○ 日 특허청(JPO)과 韓 특허청(KIPO)의 특허정보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개별 회원국으서의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특허심사의 신속화를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의 특허 심사하이웨이(PPH)의 연장 운영 및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시범사업에의 합류 추진

- DPMA는 2008년 일본 특허청(JPO)과의 PPH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 총 9건을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과의 PPH 연장뿐만 아니라 GPPH 시범사업에도 합류함에 따라 특허 우선심사 신청자격 부여 등 특허 심사기간 단축 여건이 개선되어 높은 지식재산 경쟁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기업의 지식재산을 점검해주는 「지식재산 진단(Intellectual Property Health Check)」 서비스의 강화 추진

- 지식재산 진단(IP Health Check)은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문을 하면 UKIPO가 보고서 형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로서 그 대상영역을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라이선스, 해외 상표, 프랜차이즈 등으로 확대함.

▫ 또한 영국은 자국 기업들이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현지 지식재산 당국과의 효과적인 관계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자문관의 해외파견 확대 추진

- 영국 지식재산 자문관은 2011년부터 현지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약 8,400개의 영국 기업을 지원

- 이에 UKIPO는 현재 중국, 브라질, 동남아시아 및 인도에 파견된 4명의 영국 지식재산 자문관을 통해 4억 파운드에 달하는 영국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효과를 가져 왔다고 발표

▫ 프랑스는 예금공탁금고(CDC)와 함께 국가지식재산 펀드(FSPI)의 조성 방안 추진

- 강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간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이고, 특허 소송에서 자국 기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

(4) 중국의 지식재산 중시 정책

□ 2015년 중국 국무원은 범국가적 『과학기술 체재 개혁 심화 실시방안』을 마련

- 활발한 기술이전 실시

  ○ 국가과학기관의 기술을 국가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적합한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

  ○ 특허법, 회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여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법률 구제절차를 보완

- 인센티브 부여 증대

  ○ 과학기술 성과 전환법과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과학연구원 및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직무 발명성과 수익을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추진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센터 설립 추진

- 지식재산 공공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 컨설팅, 지식재산권 평가 및 분쟁 경보 서비스 제공

  ○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제정에 참여

□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선 및 집행강화 추진

-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심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수행

-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극 규제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제도 개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개선 방안 고려

  ○ 상소 법원의 일원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고급법원 설립 방안 고려

  ○ 특허심판위원회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허무효심판 제도 개선 방안 고려

□ 경제발전의 원천인 창업 활성화와 혁신적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 창업 편의성 강화

  ○ 공정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운영

- 재정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 벤처캐피탈 펀드 구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엔젤투자 확대 등 재정 지원 확대

-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 금융기관에서의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 개발 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창설하도록 독려

- 창업투자 확대

  ○ 신산업에 대한 국영 벤처 캐피탈 기금, 중소기업 발전기금의 구성을 가속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창업 서비스 발전을 통한 생태 구축

  ○ 창업인큐베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전문 서비스를 개발하여 혁신 경험을 교류하도록 함.

- 창업 혁신 플랫폼 구축

  ○ 혁신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및 포럼과 세미나 등을 지원

- 혁신형 창업 기반 조성

  ○ 기업가정신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벤처 설립을 격려하고, 해외인재 유치를 가속화하여 첨단기술의 도입을 추진

[참고문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소송 관할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안)」, 2015.

이명희,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IP Policy, Vol. 2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정효명 외, 「지식재산 역량 강화방안」, 정책이슈, SK경영경제연구소, 2009.

최서희, 「美 특허상표청(USPTO)의 '2014-2018 전략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IP Policy, Vol. 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통계청 (http://kosis.kr)

특허청 (http://www.kipo.go.kr)

특허청, 「2014년도 특허청 업무보고」자료, 2014.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2013.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미래전망 연구: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4.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20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 분석」,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2014.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2015.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